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7. 14.(목) 16:00
담당 부서	자본시장정책관 자본시장과	책임자	과 장 이수영 (02-2100-2650)
		담당자	사무관 현지은 (02-2100-2652)

「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」 정책세미나 개최

-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의견수렴 -

I 정책세미나 개요

- '22.7.14.(목),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·한국거래소·금융투자협회·자본시장연구원·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「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정책세미나」를 개최하였습니다.

< 「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」 세미나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2.7.14.(목) 16:00 ~ 18:00 /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
- 논의주제 및 세부일정

구분	시간	내용
개 회	16:00~16:10	○ (개회사) 김소영 (금융위원회 부위원장)
주 제 발 표	16:10~16:40	○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방안 (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패 널 론	16:40~18:00	○ (사 회) 박영석 (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) ○ (토론자) - 송민경 (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) - 송영훈 (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) - 이봉헌 (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) - 이수영 (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) - 이재혁 (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) - 이현균 (한국법학원 연구위원) - 정준혁 (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)

□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중 ‘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제도화’ 와 관련하여,

○ 정부 및 유관기관 T/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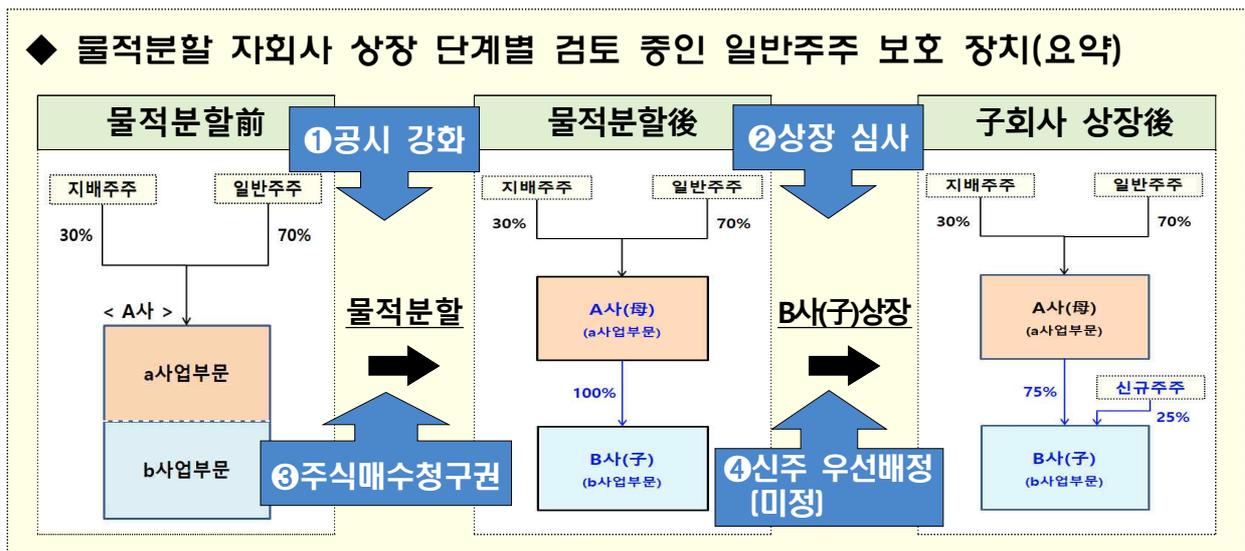
□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일 정책세미나의 취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밝혔습니다.

※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(별첨) 참조

II 세미나 논의 주요내용

※ 보도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용으로,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음

□ 오늘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된 ‘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주 보호 제도화 방안’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
❶ (공시강화) 물적분할시에도 향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계획 등 기업 구조 개편 계획 및 주주보호 방안을 기재하도록 공시 강화

- 주주가 분할 주주총회 등에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하도록 지원

② (상장심사) 물적분할 자회사가 설립 5년내 상장할 때는 모회사가 일반 주주와 충실히 소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 미흡할 경우 상장 제한

- 1)주주보호정책 미공시, 2)공시한 주주보호정책 미이행, 3)일반주주 제기 사항 합리적 검토 미시행은 주주 보호노력 미흡 사례로 예시

③ (주식매수청구권) 물적분할에 반대하지만 결정과정에서 소외된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엑시트(Exit)할 수 있는 권리 보장

④ (신주 우선배정)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문제는 장단점과 현실적 한계 등을 관계부처(법무부)와 함께 추가 검토하여 도입여부 결정

* [고려 필요사항] 보호대상 모회사 주주 확정문제, 상법상 신주 주주배정 원칙과의 조화여부, 자회사 상장전 모회사 주가 변동성 확대 등 (☞ 세미나 발제자료 참고)

□ 이에 대해 세미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다음의 의견들을 제시하였습니다.

▶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

- 물적분할시부터 다양한 유형의 일반주주를 다각도로 보호해야 하며, 원칙적으로 원래 뒀이었던 자회사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우선배정 등의 투자의향 보호 및 지배권 회복 방식이 필요
- 모회사가 주요 분할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, 상장심사시에는 우선배정여부, 전문성 있는 스텐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투자자 주주와의 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

▶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

- 공시강화, 상장심사기준 도입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
- 단, 신주 우선배정은 IPO시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발견 기능 저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

▶ 송영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

- 거래소는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주주와의 의견수렴 등 소통노력과 주주보호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심사할 예정

▶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

-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심사 강화시,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실질적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의 요청
- 분할 당시 주주들에게 단순 탈퇴권을 보장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 보호 효과 보다 기업구조조정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회사 상장계획이 있는 경우만 적용하는 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

▶ 이현균 한국법학원 연구위원

- 상법 제503조의12만으로 물적분할을 규율하고 있는 상법 규정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,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의 경우 비상장회사에 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이 같이 이뤄져야 함
- 우리사주 우선배정과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은 입법목적이 다른 제도로, 현행 상법 하에서는 상법 제418조 소정의 주주배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움

▶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- 물적분할이 이루어지면 일반주주는 핵심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게 되므로,
 - 물적분할을 할 때 회사가 상장시 자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해 주주의 처분권을 회복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상장시 그 준수여부를 심사할 필요
-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할 없는 신주발행, 인적분할 후 상장,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여러 가능한 구조개편 방식 중 해당 방식을 선택한 이유를 회사가 밝히도록 해야 함

▶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

- 일반주주 권리 보호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코리아 디스카운트(Korea Discount) 해소의 중요한 부분으로 특히, 이번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 중
-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논의를 거쳐,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·발표하겠다고 밝힘

III 향후 계획

- 금융위원회는 정책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/4분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

【붙임 1】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

【붙임 2】 세미나 발제자료